

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
이 현 찬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
「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
생각합니다.

-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광화문광장은 촛불집회, 6·10민주항쟁 등 서울시와 대한
민국의 역사적·장소적 의미가 깊은 곳으로 이를 기념할 수
있도록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
거 규정을 마련하여,

- 현행 조례에서 광화문광장 관리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.

- 시장이 광화문광장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

-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에 광화문광장 내에 전시관 및 동상과 부속조형물로 명확성과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
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